

자본시장통합법 등 주요 금융관계법령 정비내용

2007년중 정부는 금융산업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금융하부구조의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금융관계법령을 정비하였다.

먼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종래의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규제체계를 재편하였다. 이와 함께 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투자업종간의 겸영을 허용하는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였으며, 투자권유·광고 규제 등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에 지급결제서비스를 허용하는 대신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집합투자기구 설립 등의 제한을 완화하고 투자권유대행인제도를 도입하여 금융투자가 촉진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과 금융감독당국간의 사전협의 요건을 간소화하고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외국 손자회사의 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2008년부터 시행되는 신BIS 협약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조정하는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금융기관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증권회사 등 금융기관과 대주주간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하부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었다. 아울러 높은 이자율 및 불법영업으로부터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자제한법」을 다시 제정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와 감시방법을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지난해에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촉진 등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크게 확충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도 개편에 따른 일시적인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어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과도기의 잠재적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I. 머리말

II.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1.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2. 평가 및 시사점

III. 여타 금융관계법령 정비내용

1.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촉진
2. 신BIS협약 도입 등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
3. 금융하부구조 개선
4. 금융소비자 보호 등

IV. 향후 과제

I. 머리말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금융구조조정과 함께 금융개방, 금융규제 완화, 금융하부구조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금융시장 안정과 대외신인도 향상,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산업이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금융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먼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를 재편하여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간접금융과 직접금융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감시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하에서는 2007년중 정부가 추진해 온 「자본시장통합법」 등 주요 금융관계법령 정비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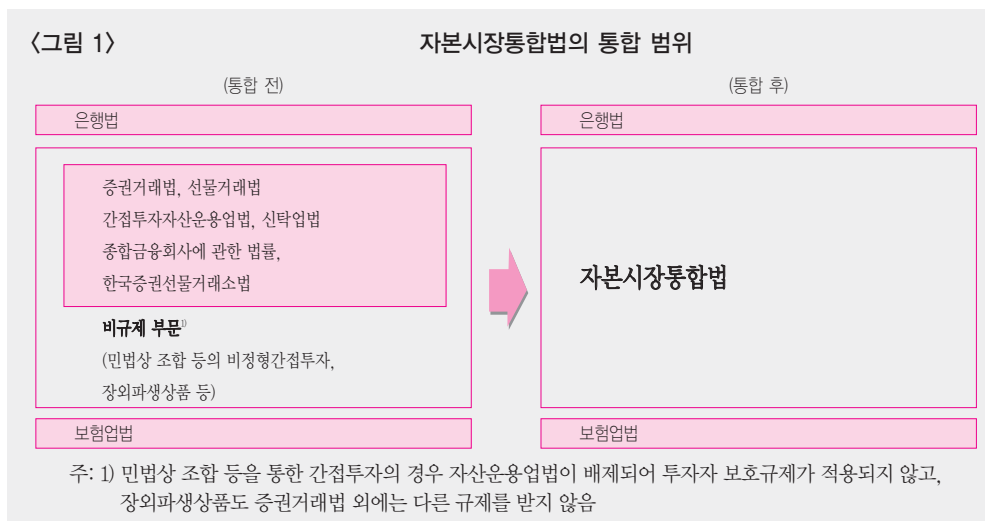
II.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1.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가. 기본 체계

정부는 대형 투자은행의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종래의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 2007.8.3, 시행 2009.2.4, 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한다)¹⁾을 새롭게 제정하였다²⁾.

먼저 금융법의 규율체계를 현행 기관별 규제에서 경제적 실질에 따라 규율하는 기능별 규제체계로 전환하였다. 또한 금융기능을 분류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업 등으로, 투자자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³⁾로 구분하였다⁴⁾. 즉, 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상품, 투자업종, 투자업자⁵⁾, 투자자의 4가지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1) 이하 괄호 내의 날짜는 시행일을 의미한다.

2) 「은행법」, 「보험업법」 등을 제외한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15개 법률 중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6개의 법률을 통합하고 나머지 「여신전문금융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등 9개 법률은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였다. 현재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은 준비단계에 있다.

3)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 위험감수능력 보유 여부에 따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였다.

나. 기능별 규율체계의 도입

현행법은 증권회사·선물회사 등 기관을 중심으로 금융업을 분류하고 있으나 「자본시장통합법」은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한 금융기능에 따라 규제하는 기능별 규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업종이 서로 다르더라도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한 진입·건전성·영업행위 규제 등을 적용하도록 하였다⁶⁾.

먼저 「증권거래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자문·투자일임·신탁업 등 6개로 분류하였다.

현행				자본시장통합법	
(방카슈랑스)		보험업		보험업 (증권과 동일)	
은행업		저축은행업 신탁업 (어음관리계좌)		은행업 (증권과 동일)	
(채권인수)	증권업	선물업	중금업	투자매매업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회사(펀드판매)				투자중개업	
은행, 보험회사 부동산·선박투자회사 등	자산 운용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증권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은행, 증권, 보험사			신탁업	신탁업	

4) 이에 따를 경우 36개 유형의 금융기능 조합이 가능하다.

투자자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5)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회사라 한다)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자로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자문·투자일임·신탁업자가 있다.

6) 예컨대, 현행법상 증권·선물 등 금융상품의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선물·종합금융회사의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진입·건전성·영업행위 규제 등이 상이하나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모두 투자중개회사로 분류하여 동일한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진입규제의 경우 기존 법률에서 증권회사·선물회사에 대해서는 허가, 신탁회사에 대해서는 인가, 투자자문회사에 대해서는 등록 등으로 기관별로 규제가 상이하였으나 「자본시장통합법」은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인가 및 등록요건이 적용되도록 하였다⁷⁾.

각 금융기능별로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에 따라 인가제와 등록제로 구분하여 6개의 금융투자업종 고객과 직접 채무관계를 갖거나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는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신탁업은 인가업무로 규정하고 투자자의 재산을 수탁하지 않는 투자일임·투자자문업은 등록업무로 규정하였다⁸⁾.

또한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모든 금융투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자본 규제,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경영공시, 경영건전성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다만 각 금융기능별로 고객의 위험노출 수준에 따라서 금감위가 건전성 규제의 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투자자를 상대로 지켜야 하는 영업행위 규제⁹⁾는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각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공통된 영업행위 규제로는 신의성실의무, 금융상품 설명의무, 손실보전 금지, 투자자의 특성 등을 파악할 의무(know-your-customer rule), 원하지 않는 투자권유 금지 등을 규정하였다.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로는 투자매매회사의 자기계약 금지, 투자중개회사의 임의매매 금지, 집합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제한 등을 규정하였다.

다. 포괄적 금융투자상품 정의 도입

금융기관이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금융투자상품만을 취급하도록 제한하는 현행 열거주의에서 투자성¹⁰⁾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전환하였다.

현행 「증권거래법」 등에서는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국채·회사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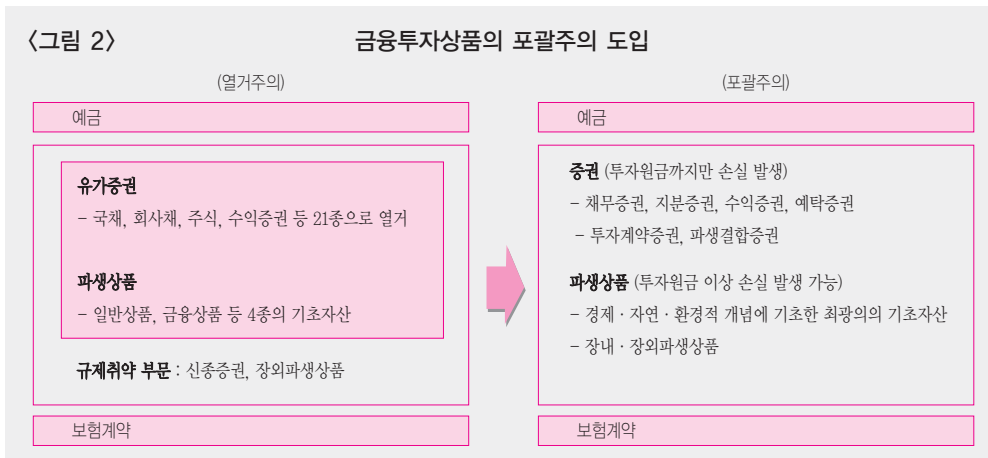
7) 자본시장통합법은 2009.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기존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신청은 2008.8.4일부터 가능하도록 하였다.

8) 구체적인 금융기능별 진입요건은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이며 위험의 크기에 따라 진입요건이 차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예: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투자자문).

9)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규제(conduct of business regulation)란 금융기관과 고객간의 금융거래관계에서 금융기관에게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여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10) 이익획득 또는 손실회피 목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 즉 원본손실 위험이 있는 것을 투자성으로 본다.

주식·수익증권 등 21종을 열거하고 파생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을 유가증권·통화·일반상품·신용위험의 4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정의하고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범위도 전통적인 위험상품 외에 모든 경제·자연·환경적 위험을 포괄하도록 확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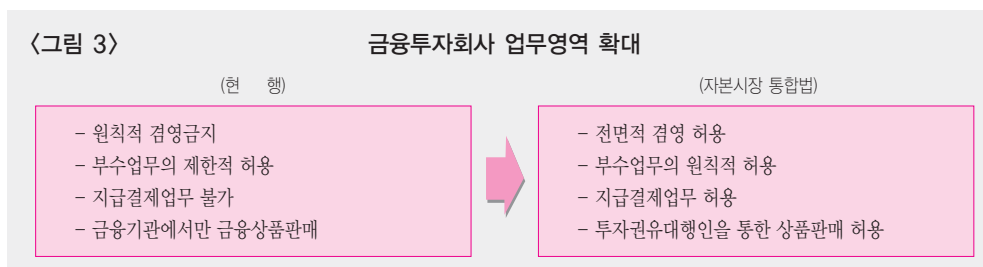
증권의 경우 회사채·주식 등과 같은 전통적 증권을 채무증권·지분증권 등으로 추상화하고, 집합투자증권·구조화증권과 같은 신종증권을 포괄할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파생결합증권 등 새로운 증권개념을 도입하였다. 증권은 추가 지급의무가 없어 최대 투자원금까지만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파생상품과 구분되며 파생상품은 거래장소에 따라 장외파생상품과 장내파생상품으로 구분하였다.

<표 2> 자본시장통합법상 증권의 정의

전통적 증권			신규증권		
분류	포괄적 정의	예	분류	포괄적 정의	예
채무증권	지급청구권 표시증권	국채, 사채 등	투자계약 증권	타인의 노력에 의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	민법상 조항·상법상의 명조항을 활용한 간접투 자기구에 대한 지분 등
지분증권	출자지분 표시 증권	주식, 신주인수권 등			
수익증권	신탁수익권 표시 증권	신탁 수익증권 등			
증권예탁 증권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의 발행국가 밖에서 발행하는 증권	국내 증권예탁증권 (KDR)	파생결합 증권	외생적 지표에 의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	추가연계증권(ELS), 신용연계증권(CLN)등

라.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현행법은 증권회사·선물회사·자산운용회사·신탁회사 등 금융기관 상호간의 겸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 등 6개 업종간 겸영을 허용하였다. 부수업무도 법률에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만, 겸영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간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이해상충 가능성의 파악·평가·관리의무를 부과하고 내부통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즉시 알리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당해 투자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금융투자업간에는 매매에 관한 정보제공 금지,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투자매매·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겸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은 금융투자회사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편 투자자 편의를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여 급여이체를 비롯한 결제·송금·수시입출금 등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에 따른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금감원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점포 방문 등에 따르는 투자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투자회사의 판매망 확충을 위해 투자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이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전수취 금지 등 각종 금지행위를 규정하였다¹¹⁾.

11) 이 밖에 위탁한 금융투자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3자에 대한 재위탁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

아울러 집합투자기구 설립과 관련하여 현재 허용되어 있는 투자신탁, 주식회사 형태의 투자회사, 합자회사¹²⁾ 외에 유한회사, 조합, 익명조합¹³⁾ 등 집합투자기구 설립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간접투자기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투자증권, 장내·외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자산운용 대상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하지 않는 이른바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를 허용하여 간접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마.투자자 보호 강화

「자본시장통합법」은 앞서 영업행위 규제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현행법에 산재한 금융상품 설명의무¹⁴⁾ 등을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확대 적용하고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할 의무와 투자권유 금지조항 등을 도입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특히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부족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를 권유하기 전에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파악하는 한편 이를 기초로 투자자의 특성에 맞게 투자를 권유하는 적합성 원칙을 설정하였다. 상품 설명의 경우 그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도록 하고 금융투자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¹⁵⁾.

또한 불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TV, 홈쇼핑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금지하고 금융상품의 위험성 등 중요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적법하게 인가받지 않은 금융투자회사의 광고를 금지하였다.

12) 현재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13)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영업자는 영업에 따른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영업자의 개인재산으로 귀속되며 영업자의 단독영업이라는 점 등에서 민법상의 조합과 다르다.

14) 현행법상 선물·자산운용·부동산투자회사에만 설명의무가 존재하고, 증권회사·신탁회사 등에는 설명의무가 없다.

15) 한편 손해배상시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 취득으로 지급한 금액에서 회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하도록 하였다.

〈표 3〉 투자자 보호의 주요내용

구 분	확대·신설	주요 내용
투자자의 구분	신설	-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
고객특성 파악의무	신설	- 투자자 특성 파악 후 본인 확인 의무화
적합성 원칙	확대	- 투자권유는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에 적합
설명의무	확대 신설	- 금융상품의 내용·위험에 대한 설명 및 본인 확인 의무화 - 설명의무 위반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배상책임 부과
부당권유 규제	확대 신설	- 손실부담의 약정 금지, 이익보장 약정 금지 -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방문·전화 등에 의한 투자권유 금지
광고 규제	신설 확대	-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투자광고 금지 - 금융상품의 위험 등을 투자광고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

2. 평가 및 시사점

자본시장통합법은 기관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규제체계의 혁신으로 평가된다. 또한 투자상품을 종전의 열거주의에서 탈피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신상품 개발과 선진금융기법 도입이 촉진될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업종별 규제에서 발생하는 규제 차익이 사라지면서 규제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함에 따라 법률 개정이 용이해져 규제의 일관성 유지와 시의성 확보도 기대된다. 또한 투자업종별 검영을 허용하여 통합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선진 투자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출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다 하겠다.

나아가 기업은 신종 금융상품으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투자상품이 출현하면서 시중의 여유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은행법, 보험업법 등과의 중복규제로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즉, 은행업이나 보험업의 경우 획기적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영업행위 및 투자자보호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영업 애로 및 규제준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¹⁶⁾. 이와 함께 금융업종별 검영 확대로 금융산업의 무한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금융서비스의 질 개선

16) 예컨대, 은행이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자본시장통합법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받지만 파생상품 취급은 은행의 부수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금융투자회사에 비해 다양한 상품의 취급이 제약될 수 있다. 한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따른 저원가성 자금 이탈, 금융투자회사의 신탁업 진출로 인한 은행 신탁계정 위축 등으로 은행의 수익기반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

이라는 순기능이 기대되는 동시에 금융시스템 불안정이나¹⁷⁾ 금융소비자 피해 가능성¹⁸⁾도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 규제 완화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기회 및 활동범위 확장으로 외국계 투자은행의 국내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이 경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외국계 금융회사에 국내금융시장을 크게 잠식당할 가능성도 있다 하겠다.

한편 자본시장통합법은 아직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시행령을 제정해야 하겠으며 은행법, 보험업법 등 관련 법률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규제 불평등이 새롭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표 4〉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요약

구 분		현 행	통합법
기능별 규제도입	금융투자업 분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지 않고 별도 법률에서 기관별로 규정	경제적 실질에 따라 6개 업무로 분류
	투자자 분류	없 음	전문·일반투자자로 구분
	진입,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	기관별 규제	기능별 규제
	집합투자업 규제	개별 법률에 따라 상이	규제 통일
포괄주의 규제 도입	금융투자상품 정의	없 음	추상적 정의
	증권·파생상품 정의	증 권 : 열거주의 파생상품 : 기초자산 열거	추상적 정의 (열거주의 가미)
업무영역 확대	금융투자업간 겸업	원칙적 금지	허 용
	부수업무	영위가능 부수업무를 열거 (포지티브 방식)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 (내거티브 방식)
	지급결제업무	제한적 취급 (은행 매개)	허 용
	투자권유대행인	없 음	도 입
	집합투자기구 설립 방식	제 한 (투자신탁, 주식회사, 합자회사)	제한 철폐
	집합투자 대상자산	열 거	재산적 가치있는 모든 재산
투자자 보호 강화	투자자 보호 적용 영역	미적용 영업 방치	모두 적용
	투자권유 규제	없 음 (설명 의무는 일부 존재)	도 입
	투자광고 규제	없 음	도 입

17) 예컨대, 장외파생상품에서의 투자 실패로 금융투자회사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결제대행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 내 여타 계열금융회사로의 위험전이 등으로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18) 위험구조가 복잡한 다양한 금융투자상품들이 등장함에 따라 투자자의 정보부족이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Ⅲ. 여타 금융관계법령 정비내용

1.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촉진

정부는 금융기관이 국내시장에서 성장의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먼저 「금융지주회사법」(2007.11.4) 및 동 「시행령」(2007.11.12)을 개정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범위에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시켜 자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외국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종래에는 금융지주회사가 일정비율¹⁹⁾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융감독당국이 기준지분 이하로도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은행이라 하더라도 외국 손자회사로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회사와 동일업종으로 제한되었던 외국 손자회사를 모든 금융업종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 사모투자펀드(PEF)가 해외 M&A시장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PEF가 역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해외자산에 투자할 경우에는 자산운용 규제²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2007.12.28). 아울러 PEF의 투자대상도 완화하여 외국 금융기관 등이 채권자인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도 허용하였다. 보험회사의 PEF 출자를 확대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범위에 PEF와 선박투자회사를 추가하였다(「보험업법 시행령」, 2007.8.17).

또한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이 해외점포를 신설할 때 적용하는 사전 협의기준을 완화하여 규정화함으로써 해외점포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은행업 감독규정」, 2007.8.30)²¹⁾. 아울러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설정·운용하는 외국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해외의무판매 비율을 50%에서 1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자산운용회사의 해외진출을 용이하도록 하였다(「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2007.4.1).

이 밖에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및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금융중심지

19)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는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20) 기존에는 경영권 참여목적의 투자(투자대상 회사의 주식·출자지분 10% 이상 보유 또는 이사 임면 등 실질적 경영 참여가 가능한 10% 미만 투자 등)만 가능하였다.

21) 기존의 4가지 요건 ① BIS비율 10% 이상, ②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 ③ 해외점포 신설이 신청은행 및 진출은행의 경영건전성에 기여, ④ 진출대상국의 제한이 있거나 국가간 경제협력의 필요상 심사·조정을 요하는 경우의 개별 심사에서 2가지(①, ②) 요건으로 완화하였다.

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2007.12.21, 시행 2008.3.22).

2. 신BIS협약 도입 등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

정부는 은행의 리스크관리 선진화와 자본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8년 신BIS협약 시행을 위해 자기자본규제제도를 최저자기자본 관리(Pillar 1),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2), 시장규율 강화(Pillar 3) 등 3대 축으로 더욱 정교하게 개선하였다(「은행업 감독규정」, 제정 2007.6.28, 시행 2008.1.1)²²⁾.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당국의 기준에 따르던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모든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평가해야 하는 체제로 전환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저자기자본 관리(Pillar 1)와 관련하여 신용리스크 측정에 있어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고, 신용리스크 이외에 시장리스크·운영리스크 등도 자기자본 관리대상에 추가하였다. 또한 개별 은행간 리스크 관리능력에 차이가 있는 점을 반영하여 내부등급법, 표준등급법 등 다양한 방식중 개별은행의 능력에 맞는 리스크 측정방식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이 신용·시장·운영리스크 이외에도 금리·유동성 등을 감안한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규율 강화 차원에서 자기자본 세부내역과 리스크별 측정방법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였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와 관련하여 2007년중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기업여신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정상 기업여신에 대한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하였다(「은행업 감독규정」, 2007.12.31)²³⁾. 또한 증권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투자자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예방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신용거래 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의 최저율을 각각 매수대금의 40%, 신용거래

22)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경전	변경후
1. 자기자본비율 산출		
신용리스크	- 감독당국 제시	- 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를 차등
운영리스크	- 미반영	- 반영
2. 감독기능	없 음	- 감독당국의 자본적정성 평가시스템 점검 및 조치
3. 공 시	없 음	- 리스크 측정 방식 및 자기자본 공시 등을 통해 시장규율 강화

주 :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시장리스크는 종전과 동일

23) 정상 기업여신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종전 0.7%에서 0.85%로 상향 조정하였다. 특히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0.9%를 적립하도록 하였다.

용자액의 140%로 명시하였다(「증권업 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제정 2007.12.28, 시행 2008.1.1). 신탁의 여유자금이나 중앙회의 상환준비금·신용예탁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중 회사채의 경우에는 그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금감위가 매입한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향후 조합 및 중앙회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였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2007.11.23).

이 밖에 농협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가 부실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한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농협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2007.8.3, 시행 2008.2.4)

3. 금융하부구조 개선

정부는 금융기관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 방지, 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대, 외국환거래 관련 규제 정비 등 금융하부구조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먼저 금융기관과 대주주간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한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정 2007.7.19, 시행 2008.1.20)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증권회사·선물회사·자산운용회사·종합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률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당 금융기관 및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⁴⁾.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및 조치내용을 금융기관 신용공여 심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던 것을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수익구조,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07.9.30).

이 밖에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실효성 있게 정비하였다. 「외국환거래법」(2007.1.26) 및 동 「시행령」(2007.3.9)을 개정하여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이 등록·인가와 관련한 법령을 위반할 경우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

24) 또한 상호저축은행·선물회사·종합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에 감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 없을 경우 실질적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는 회계·재무분야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는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또한 정형화된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취득에 있어 재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심사를 생략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취득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금융기관이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한도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사후에 금감위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7.4.27)을 개정하였다.

4. 금융소비자 보호 등

정부는 미등록 사채업자 및 대부업자의 높은 이자율 및 불법영업으로부터 저신용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우선 등록되지 않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8년 폐지하였던 「이자제한법」(2007.6.30)을 다시 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 있어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되, 최고이자율은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연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였다.

또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2007.12.21, 시행 2008.3.22)을 개정하여 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연 70%에서 연 60%로 하향조정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금감원의 직권검사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대통령령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 상한을 연 66%에서 연 49%로 인하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였다(「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10.4).

건전한 할부금융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2007.4.30)을 개정하여 할부금융업자의 할부금융 이용자에 대한 거래조건 서면교부 의무를 신설하고, 할부금융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로 서면교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면교부 대상인 거래조건에 취급수수료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할부금융 이용자가 할부금융업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운용을 위해 「휴면예금 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7.8.3, 시행 2008.2.4)을 제정하여 휴면예금이 저소득층의 창업 또는 취업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2007.8.3) 제정하여 금융기관이 일정금액 이하 휴면예금을 여타 금융기관에 원권리자의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중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면예금에 대한 원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였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종신연금 형식의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 「시행령」(2007.4.12)을 개정하였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은 대출기간이 길고 금리 상승,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대출금 회수위험이 커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업무를 추가하였다.

IV. 향후 과제

우리 금융산업은 그동안 경쟁과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금융제도 정비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영합리화 노력에 힘입어 과거의 비효율에서 벗어나 수익성과 건전성 및 투명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만해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촉진 등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크게 확충되었다.

그러나 제도 개편에 따른 일시적인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어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과도기의 잠재적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 금융시장으로는 금융산업이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만큼 우리 금융기관들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고수익원을 찾아 글로벌 영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겠다. 또한 정부는 금융산업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규제체계의 선진화를 꾸준히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회계 및 공시제도, 금융기관 소유지배구조 등 금융하부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율규제기구 등 시장규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하겠다.

〈표 5〉

자본시장통합법 이외의 주요법령 정비내용

금융관계법령	주요내용
1.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촉진	
금융지주회사법 및 등 시행령	-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편입허용, 금융지주회사의 외국 손자회사 업종 제한 완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 사모투자펀드(PEF)가 역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해외자산에 투자할 경우 자산운용 규제 완화
은행업 감독규정	- 은행 해외점포 신설 사전협의 기준 간소화
2. 신 BIS협약 도입 등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	
은행업 감독규정 및 동시행세칙	- 신BIS협약에 기초한 자기자본규제제도 도입 - 정상 기업여신에 대한 은행의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률 상향 조정
3. 금융하부구조 개선	
상호저축은행법,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종금법, 여전법	- 금융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의무화, 금감위에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외국환 거래법 및 동 시행령	-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등록·인가 취소사유 명시, 해외 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에 대한 심사생략 근거 마련
4. 금융소비자 보호 등	
이자제한법	-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 제한(40%)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 대부업자의 최고 이자율 상한 인하 (법률 : 연 70% → 연 60%, 시행령 연 66% → 연 49%)

(조사국 금융산업팀 과장 신상준, 조사역 권태울)